

인천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2가단2432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박정혁, 문옥, 유병일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9. 20.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9,720,209원 및 그 중 19,121,058원에 대하여 2022. 5. 10.부터 2022. 7. 26.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21. 6. 30.자1) 전세권설정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3. 피고 B은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2. 4. 21. 접수 제134484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오승준

1) 청구취지에는 2022. 4. 21.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보인다.